

## 2023년도 중소기업 R&D역량제고사업 'R&D기획지원' 2차 시행계획 공고

『2023년도 중소기업 R&D역량제고사업 R&D기획지원』 2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4월 20일  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### 1. 사업개요

#### ☐ 사업목적

- R&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, 자발적인 R&D기획을 촉진
-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기획지원

#### ☐ 지원규모(2차) : 28억원, 561개 과제 내외

#### ☐ 지원유형 : 자유공모

#### ☐ 지원대상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부 R&D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

#### ☐ 지원내용

| 내역사업    | 지원기간 | 지원한도 |
|---------|------|------|
| R&D기획지원 | 3개월  | 5백만원 |

\*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# ☐ 공고기간 : 2023. 4. 20.(목) ~ 2023. 6. 19.(월)

\* 전산접수기간 : 2023 4. 27.(목) ~ 2023. 6. 19.(월) 18:00까지(홈페이지 : 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

## 2. 추진근거 및 체계

### 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관련 행정규칙,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
-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
- 중소기업R&D역량제고사업(R&D기획지원사업) 관리지침

### □ 추진체계



## 3. 지원내용

### □ 지원규모(2차) : 28억원, 561과제

| 구 분      | 구분 | 모집과제수 | 지원예산 | 공고시기 |
|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R&D 기획지원 | 1차 | 102   | 5억원  | 1월   |
|          | 2차 | 561   | 28억원 | 4월   |

## □ 지원분야 : 자유공모

- 기획과제 주제, 내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

## □ 지원방법 : 기획지원

-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통한 R&D기획을 지원
- 과제개발기간 종료 후 R&D사업 연계지원을 위해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

## □ 지원내용

-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
- \*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,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기획사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&D기획을 수행
- \*\* 기획기관은 PM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종결과물(연구개발계획서)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

## □ R&D사업 연계지원(창업 7년 이내,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해당)

-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(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)
- 기획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(서면평가)\*를 실시하여 R&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
- \* IRIS시스템으로 연계지원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연계추천 대상과제 선정 방법은 변동 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 2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\*
- \* 디딤돌 기관추천형 신청자격을 부여하며, 해당 사업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

## □ 지원대상

### ① (신청자격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
-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, 중소벤처기업부 R&D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
- \* 단, 중소기업R&D역량제고(R&D기획지원,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,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-up R&D-현장수요형),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,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, 연구 기반활용(플러스), 산학연 Collabo R&D(1단계, 예비연구),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(1단계, 기획지원),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(1단계,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),

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(1단계, R&D기획),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(R&D)(1단계,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),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(1단계, 과제기획),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(1단계, BM기획, 진단기획)은 수행이력에서 예외로 함

**\*\* 선정 과제는 협약 전 R&D역량강화교육 온라인교육 및 오프라인 기본과정 수료 필수**

##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

- 협약대상 또는 지원(후보) 과제로 선정(협약)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
-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은 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\*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

\* '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'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

## □ 지원제외 사항

-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③ 기(既) 개발/기(既) 지원 여부
  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  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  -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-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  - 연구개발기관,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(장비 구입실적 등), 회수금·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
\*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| 구 분      | 확인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무사항 불이행 | ○ 종합관리시스템(smtech.go.kr) → 과제수행 → 제재조회 → 중기 R&D 사업 제재조회 |

⑤ 참여제한 여부

- 연구개발기관, 대표자(공동대표, 각자대표 포함)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| 구 분  | 확인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참여제한 | ○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.go.kr) → 과제관리 → 제재정보조회 등 |

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(단,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(공사)는 예외)

-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)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\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
㉠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
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- \* 단,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
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(채불사업자포함)로 등록된 경우

- \* 단,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
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- \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
< 관련 문의처 >

- ☞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→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
- ☞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 →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, ☎055-751-9636) 또는 국번없이 1357

**<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>**

- ☞ 울산광역시 동구, 경상남도 거제시, 통영시·고성군, 창원시 진해구, 전라남도 목포시·영암군·해남군, 전라북도 군산시

**< 관련 문의처 >**

- ☞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"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"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
→ 주채권은행에 문의
- ☞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
→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(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)  
→ 공장, 기계장치, 시설 등 구입(신축) 증빙자료

## 4. 지원기준

### □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
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연구개발비의 80% 이내(최대 3개월, 5백만원 이내)
-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) : 연구개발비의 8% 이상\* 부담

**< 연구개발비 작성 예시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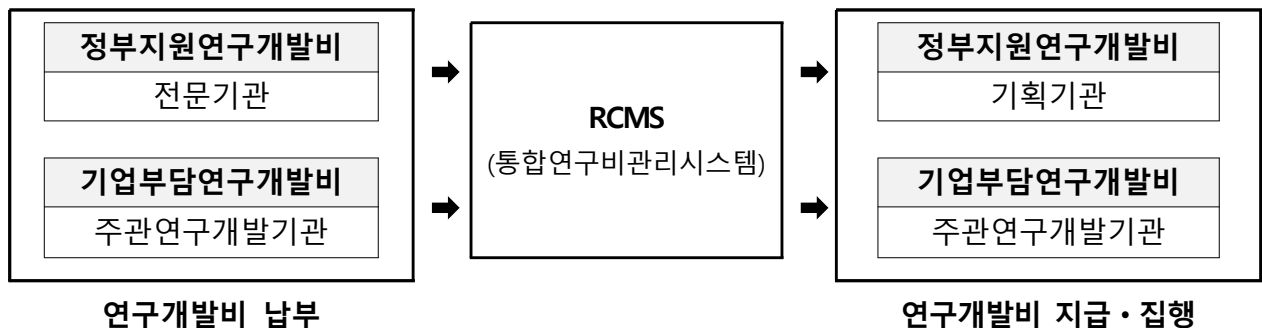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원, %)

| 구분             | 정부지원<br>연구개발비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|     |       | 연구개발비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현금        | 현물  | 합계    |       |
| 1차년도           | 5,000         | 500       | 750 | 1,250 | 6,250 |
|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(%) | 80            | 8         | 12  | 20    | 100   |

\*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)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비로 계상

\* 코로나-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-11호) 제4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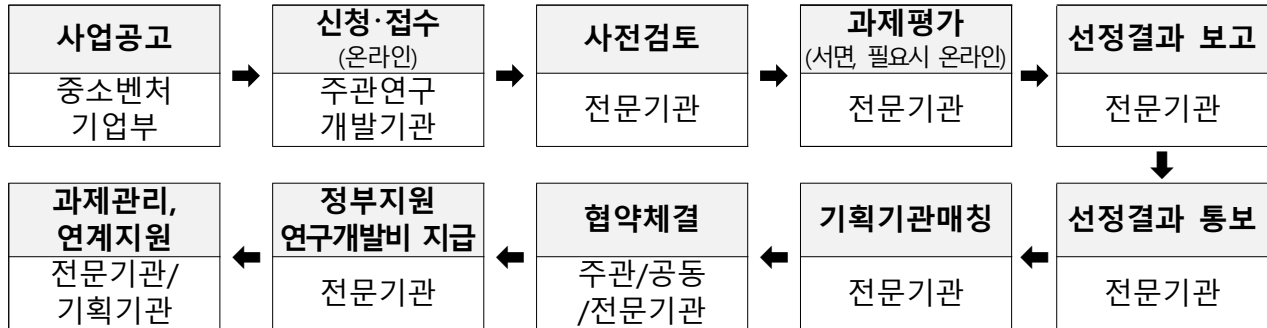
### □ 연구개발비(현금) 지원 절차


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R&D기획업무를 수행하는 기획기관으로 지급

## 5.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

### □ 평가절차



\* (주관연구개발기관) 과제 신청기업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공동연구개발기관) 기획기관

### □ 선정 평가방법

- (서면평가)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R&D기획제안서의 필요성·적정성, 기술개발역량, 기술성,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과제로 추천
- (과제선정) 가·감점을 포함한 서면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, 협약 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

### □ 평가기준

| 평가항목            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필요성<br>·<br>적정성 | 개발 기술의 기획 필요성 및 타당성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| 목표 수준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| 5   |
| 기술개발<br>역량      |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인력 역량 | 10  |
|                 | 주관연구개발기관 업종과 기획기술과의 연관성    | 5   |
| 기술성             | 기획 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          | 20  |
|                 | 기획 기술의 개발내용과 방법의 타당성       | 20  |
| 사업성             | 기획 기술의 제품화 및 실현 가능성        | 30  |
| 합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

○ 동점자 처리 기준

-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,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,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, 필요성·적정성, 기술개발역량 순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
- 모든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

□ 가 · 감점

- (가점) 점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

| 분야         | 우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점 | 확인방법 (증빙서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과창출<br>강화 |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점 | 최종평가확인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<br>* 최종평가 결과 '우수' 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점 | 최종평가확인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점 | 표창장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점 | 표창장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생태계<br>보완  |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점 | 「여성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점 |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(장애인등록증 확인필) |
|            |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점 |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      |
|            |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<br>*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및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| 1점 |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      |

\* 단, 성과창출 강화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

### < 중소기업 R&D역량제고(기획지원) 가점 >

| 연번 | 가점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점 |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 |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             | 1점 | 벤처기업 인증서<br>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                |
| ②  |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  | 1점 |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인증서<br>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 |
| ③  |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| 1점 |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<br>(MAIN-BIZ)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
- (감점)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

| 연번 | 감점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점  | 확인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
| ①  |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점 | 전문기관 확인 |
| ②  |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*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<br>* 정당한 사유 : 1.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,<br>2.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| 1점  |         |

## 6. 신청 및 접수 방법

### □ 공고 및 접수기간

- 공고기간 : 2023. 4. 20.(목) ~ 2023. 6. 19.(월)
- 접수기간 : 2023. 4. 27.(목) ~ 2023. 6. 19.(월) 18:00까지

### □ 신청 및 접수방법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·접수

- ☞ 신청방법 : 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통합업무포털서비스 → 과제접수 → 신청공고목록 → 해당 정부부처(중소벤처기업부),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 검색 → 해당 공고 접수 클릭·신청하기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- ☞ 신청서류 : 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고 → 해당 정부부처(중소벤처기업부),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 검색 → R&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첨부 신청서류 확인
- ☞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: 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 → 로그인 → 업무포털서비스 → R&D고객센터 → IRIS사용매뉴얼 → [IRIS R&D통합업무포털\_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- ☞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([smtech.go.kr](http://smtech.go.kr))에서 별도 신청·접수 불가하나, 신청서류 확인가능

○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

| 1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단계                 | 3단계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회원가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온라인 항목별 입력 및 파일 업로드 | 최종 확인 및 제출 |
| <p>① 1단계 : 회원가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a href="http://www.iris.go.kr">www.iris.go.kr</a>)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,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(모든 참여연구원의 회원가입 후 연구자 등록 및 기관 등록 필요)</li> </ul> <p>② 2단계 : 항목별 작성 및 파일 업로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) 신청접수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a href="http://www.iris.go.kr">www.iris.go.kr</a>)을 통해 직접 입력</li> <li>- (연구개발계획서)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 후 작성한 파일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a href="http://www.iris.go.kr">www.iris.go.kr</a>)에 업로드</li> </ul> <p>③ 3단계 : 최종 확인 및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단계 완료 후 최종확인 및 제출(신청·접수 완료)<br/>(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)</li> </ul> <p>☞ 제출 완료된 연구개발계획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, “최종확인”을 통해 작성했던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필히 점검 후 “제출”</p> <p>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~3일 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</p> <p>* 연구개발계획 온라인 최종 확인 및 제출버튼 반드시 클릭 후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</p> <p>**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,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 접수 불가</p>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
## □ 필수 제출서류

### ○ 공통 구비 서류

| 연번 | 서 식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서류     |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      | 해당시 |
| ①  |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<br>* 개발기간 시작일은 '23.8.1.로 기재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<br>** (본문1) 20페이지 이내 작성,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<br>*** (본문2)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| 본문1<br>○ |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문2<br>○ |     |
| ②  | 신용상태 조회.정보활용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|     |
| ③  |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|     |
| ④  |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|     |
| ⑤  |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<br>*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. 단,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|     |
| ⑥  |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<br>*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('21년도)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, 관할 세무서 신고)를 제출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('20년도)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 제출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|     |
| ⑦  |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○   |

## 7. 유의사항

- ① 가점 및 감점은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」을 따르며,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
- ② R&D기획지원 과제는 지정형 기획기관으로 운영되며, 사업신청 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획기관을 참조
- ③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(출원·등록)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,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(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)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\* ㉔ (예외)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가능

\*\* ㉔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·관리) 및 시행령 제32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)에 따름

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대표이사, 연구책임자 등)는 채무 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\* 단,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(공사)는 예외

## 8. 문의처

### ☐ 사업안내

| 담당기관(부서)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 화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총괄     | 중소벤처기업부<br>(기술개발과)       | 시행계획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<br>통합콜센터<br>(국번없이) 1357 |
| 전문기관    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<br>(지역협력사업실) | 신청·접수, 기획제안서 작성,<br>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스템문의    |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<br>콜센터      | 과제 접수(시스템 입력) 관련 사항              | 1877-2041                    |

### ☐ 기획기관 문의처

| 순번 | 기획기관명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 | 웍스          |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E타워 18, 19층       | 02-726-1167  |
| 2  |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(청량리동)                    | 02-3299-6037 |
| 3  | 아이피온        |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4, 7층(둔산동, 건국타워)           | 02-2038-4272 |
| 4  | 특허법인 다나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길 11(역삼동, 광성빌딩 신관 4-6층, 12층) | 02-6957-9902 |
| 5  | 특허법인 해담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3, 16층 1호(역삼동, 송촌빌딩)       | 02-554-8090  |
| 6  | 특허법인 부경     | 부산시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12, 6층(거제동, 대한타워빌딩)      | 051-503-6633 |
| 7  | 특허법인 이지     | 서울시 강남구 서초대로78길 52, 강남역인앤인빌딩 6층            | 02-6205-5727 |
| 8  | 특허법인 도담    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, S동 909호              | 031-602-4143 |
| 9  | 테크비즈랩 정성    |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9길 8, 602호(논현동, 재정빌딩)        | 02-6953-1417 |
| 10 | 다래전력사업화센터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, 11층(역삼동, 한독약품빌딩 11층)   | 02-3475-7870 |

☞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<http://www.iris.go.kr>
-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-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<http://www.mss.go.kr>
-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: "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"([http://pf.kakao.com/\\_lIfqd](http://pf.kakao.com/_lIfqd))